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11. 18.

예 천 군 수

1. 모집인원

사업유형	모집인원	자격요건	근무기간
합계	70명	만 18세 이상 관내 미취업 등록장애인	'25. 1. 1. ~ 12. 31. (1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3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0명		
복지일자리(참여형)	15명	만 18세 이상 관내 미취업 지적 또는 자폐성 등록장애인	
특화형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2. 근무시간 및 보수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11월 주 40시간 / 12월 주 37.5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11월 주 20시간 / 12월 주 19시간
- 복지일자리(참여형) : 주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1~11월 주 25시간 / 12월 주 23.5시간

○ 근무내용 : 복지서비스지원 및 일반행정업무, 요양보호사 보조 등

○ 근무지 : 군청, 복지시설,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 보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11월 2,096,270원 / 12월 1,965,880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11월 1,048,140원 / 12월 993,980원
- 복지일자리 (참여형) : 1~12월 561,680원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1~11월 1,313,930원 / 12월 1,233,690원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된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 있을 수 있음

○ 퇴 직 금

- 지급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미지급 : 복지일자리(참여형)

* 사업기간(1. 1. ~ 12. 31.) 전체 참여자 대상으로 지급(중도포기 및 중도 참여 시 미지급)

* 복지일자리 참여자(월56시간)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관내 미취업 장애인

○ 거 주 지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천군으로 되어 있는 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일반형일자리(전일제)를 제외한 사업유형은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간헐제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미해당), 만 65세 이상인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선발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평정요소 : 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가점여부 등

○ 2차시험 : 면접전형(1차시험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능력 및 평정요소별 평가)

- 평정요소 : 직무 수행능력, 업무 이해도, 대민서비스업무 적합도, 참여의지 등

- 시험방법 : 그룹면접, 면접위원 심사점수 합산

○ 최종선발 : 1, 2차시험 득점한 점수 개인별 합산하여 고득점순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우선선발 기준

- 1순위 : 최근 3년간('22~'24)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 : 최근 3년간('22~'24)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근 3년간('22~'24)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
- 가점대상 : 취업지원 대상자, 졸업예정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5. 시험일정

공고 및 신청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예정)	최종선발 합격자발표(예정)
'24. 11. 20.(수) ~ 12. 3.(화)	'24. 12. 6.(금)	'24. 12. 10.(화) ~12. 11.(수)	'24. 12. 24.(화)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개별 통보

6.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4. 11. 20.(수) ~ 12. 3.(화)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신청기간 내에 본인 방문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접수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방문 신청·접수

7. 제출서류(붙임서식)

- (필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서식1]
-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서식2]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1부[서식3]
- (필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서식4]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구비서류[서식1 하단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로도 발급 가능
-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 일반형(전일제/시간제)일자리: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특수학교(급), 대학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졸업예정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최근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아래 관련서류

구분	제출서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유(有)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진단서
	군복부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 ① 미혼여성이거나,
 -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8.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성범죄경력 등 범죄경력의 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별지2]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별지3-1] 참조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별지3-2] 참조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제외한 구직자 대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또는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공고 게시판 참조.
- 모든 서류의 작성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선발을 취소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일정,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54-650-8496)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문의.

붙임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서식 1부. 끝.

참고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총점의 10점 가점	총점의 5점 가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 애국지사가 제6조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6조1항: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애국지사의 가족 - 애국지사가 제6조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6조1항: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제2항제3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제1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 제1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제1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제1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성범죄경력조회 및 참여제한 관련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별지3-1]

기초생활보장사업 근로소득 공제액범위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별지3-2]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근거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